

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가. 주민 1인당 쓰레기배출량이 감소하여 봉투수입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고,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의2(납부필증무상공급지급기준)에 의거 6월 1일부터 음식물 납부필증도 추가지급 됨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 되는 쓰레기봉투량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,
- 나. 기타 조례상에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.

2. 관계법령

「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11, 16, 22조」
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4조의2

3. 주요골자

- 가. 쓰레기봉투의 판매소 표지 부착 설치 의무 완화 (안 제11조제3항)
- 나. 주민 1인당 기본배출량을 월 60ℓ에서 월30ℓ로 조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무상 지급에 따른 무상 쓰레기봉투 지급량을 반영하고자 함(안 제16조)
- 다. 과태료납부 독촉장을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완화 (안 제22조제2항)

4. 검토의견

본 조례 일부개정 건은

-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정착, 음식물 줄이기에 대한 주민의 인식변화확산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체계를 종전의 봉투사용에서 수거용기로 전환함에 따라 주민 1인당 쓰레기배출량과 그에 상응한 봉투수입의 감소추세에 따라
- 주민 1인당 기본배출량을 월 60ℓ에서 30ℓ로 줄이고, 과태료 독촉장 납부기한을 종전의 7일에서 15일 이내로 조정하는 등 일례의 주민 편의 조치와 쓰레기봉투의 판매소 표지 부착 설치 의무를 완화 하는 등 위민봉사 행정구현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
- 특히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「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폐기물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에 주민 1인당 기본배출량과 과태료 독촉장 납부기한 조정, 납부필증 무상공급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

위 조례 일부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.